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9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4.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회의(2026. 3. 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권영진의원)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

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종수)

가.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도입(안 제49조의20 신설 등)

1)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질서 확립과 여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9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안 제85조제1항제22호)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플랫폼중개요금(여객 운송 중개요금 외 부가서비스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등 등록된

현 행	개 정 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9조의14, 제49조의20----------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 ----------.

현 행	개 정 안
1. ~ 21. (생 략)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41. (생 략) ② ~ ④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0---------- 23.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1)2)].

이 중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가맹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플랫폼가맹사업의 경우에만 해당)가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타다·우버를 제도화한 것이 플랫폼운송사업(허가제)이고, 카카오T블루가 대표적으로 플랫폼가맹사업(면허제)에 해당하며, 카카오T는 플랫폼중개사업(등록제)에 해당함.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 운임·요금의 조정 등 안전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 플랫폼중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이와 같은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플랫폼중개요금 등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지배적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특정 운송사업자나 운전업무 종사자를 우대하여 여객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경우 택시운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인 여객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9조의20제1호에서는 개선명령의 하나로 "여객의 공정한 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배정'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여객 배정의 공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 행위 유형 등이 제도적 또는 일반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최근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여객 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사례가 나타나면서[4] 소관 당국의 제도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여객 배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5].

4)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1.15.) /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2024.10.2.) /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2023.2.14.) 등 참조

다음으로 안 제49조의20에 따르면, 개선명령의 대상은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되는데, 플랫폼중개사업은 현행법상 임의등록 사업으로서 중개요금이 유료인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6].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중개사업과 플랫폼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중개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고 가맹택시 등을 우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플랫폼중개사업을 미등록으로 영위할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규제 가능성, 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49조의2제3호에서는 '여객 운송 중개요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7] 이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

5)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을 두고 있음(제21조, 제34조의2, 제42조, 제49조의9, 제49조의12).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그 밖에 개선명령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신설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명령 권한 행사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개선명령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개선명령 미이행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안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85조제1항제22호)[8], 이는 개선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2) 관계 기관 등 의견

가)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및 플랫폼업계 간 공정한 택시운송 시장 조성, 대형화된 플랫폼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택시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도입을 통한 정부차원의 관리제도가 필요함.

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한 여객의 배정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며, 중개요금 등에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8)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을 두면서 개선명령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근거(제79조)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허가·등록 등의 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제49조의15, 제85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